

금조성으로 인한 단가인상과 그로 인한 비합리적인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정부 부처간 합의는 물론 업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규제 보다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엘베스트 OOH팀 박현 부장은 “작년 한해 야립광고가 중단되면서 옥외광고시장이 축소, 침체되었던 게 사실인데,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옥외광고에 새로운 관심이 유발되고 시장이 살아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이 마련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전했다. 다만 규제정책보다는 버스외부광고나 지하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屋外廣告物之管理法</u>	<u>옥외광고물 등 관리법</u>
第1條(목적) 이 法은 屋外廣告物의 表示場所 표시방법과 摺示施設의 設置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规定함으로써 美觀風致과 美風良俗을 유지하고 公衆에 대한 危害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옥외광고물의 설치·표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第2條(廣告物 등의 许可 또는 申告) ①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場所 및 물건에 广告物 또는 揭示施設(이하 "廣告物등"이라 한다) 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广告物등을 표시하거나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기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许可 또는 申告事項은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광고물 등의 许可 또는 申告) ① —————
1.-6. (생 라) ② (생 라) <u>신 설</u>	<u>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u> —————
第3條(禁止廣告物 등) ① (생 라) ② 누구든지 广告物에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4. (생 라) <u>신 설</u>	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허기를 받아야 한다. 허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이상의 시·도를 경계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시·도지사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기를 받아야 한다.
第5條(禁止廣告物 등) ① (생 라) ② —————	제5조(禁止광고물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 기타 法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 <u>신 설</u>	1.-4. (현행과 같음) 5. 인종차별 또는 성차별적 내용 등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종전 제5호와 같음)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주진

철광고에서 보여지듯이 시장의 자가정화기능에 맡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철광고의 경우 최근 2호선의 무분별한 광고물량을 대폭 줄이고 디자인과 사형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정화노력을 하고 있다.

실버불렛 매체팀 윤종익 부장도 “형태가 바뀌더라도 옥외광고시장에서 야립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옥외광고업계에서는 광고마진률이 과거보다 못할 것이란 얘기가 많다며 광고단가 상승 우려와 함께, 야립광고나 버스외부광고 등 정형화된 옥외매체는 과거에 비해 구체적인 규제조항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KNA** 취재 | 이수지

현 행	개 정 안
	<p>하여야 한다.</p> <p>(2)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후의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옥외광고물 및 관련 사업 발전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율적 경비제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광고주 및 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협력과 자율구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주민참여와 민간단체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그 기반조성을 위한 사항 5. 옥외광고업의 시설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필요한 예산의 확보·배분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우수 광고물 및 모범 옥외광고업자 등에 관한 지원 등 옥외광고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3)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이하의 항에서 같다)는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시·군·자치구의 광고물등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특색 있는 발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이하의 항에서 같다)과의 협의 및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하여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및 권고를 하거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p> <p>(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지원계획(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종합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폐쇄하고 특색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경비 시범지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무대하는 등</p>

현 행	개 정 안
政府(國家)의 广告物들 계약은 地方 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이하 "國家등"이라 한다)는 담당機關의 广告物들 중 第3項第1 항의 標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對象 广告 物들에 대해 離別이 아니 广告主를 위한 표 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公共의 目的 을 위하여 廣告기라고 일컬어져 广告物管 理審議委員會의 證明을 거쳐 許可를 받거나 申告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범례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 제 한) ①다른 범례 또는 조례에서 광고물들의 설치·표시에 대하여 제3조제2항 및 제4 조제1항의 특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범례 또는 조례에서 이미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기하여 광고물들을 설치·표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 되 행정자치부장관과 해당 광고물들의 종 류·수량 및 위치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들을 제의
신설	

선설

선설

<신설>

第7條(광고물관)

현 행	개 정 안
② ③ (생 력) <u>신 설</u>	② ③ (현행과 같음)
	<u>제7조의2(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설치) ①</u> 광고물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의 히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여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는다. 1. 광고물등에 관한 중요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관련사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및 민간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광고물등의 표시 및 설치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 또는 국가등의 광고물의 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6.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 등이 행하는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척의 7. 그 밖에 광고물등의 제도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의 법외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1. 대통령이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광고물등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뛰어난 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관계 민간단체의 대표 ③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適用排除) ①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광고물등 2. 國家등이 公共의 目的로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광고물등 3. 貿易促進等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광고물등 4. 美體禮貌 and 美風良俗을 해지 치 아니하는 별위에서 宗教儀式을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광고물등 5. 雜物의 보호·管理를 위하여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광고물등 6. 學校 및 宗敎敎會의 廟宇内에 표시하거나 設置하는 광고물등(營利目的의 광고물을 등을 제외한다)	제8조(적용제외)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기 기간이 30일 이내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관호상제 등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 2. 학교에서 또는 종교의식을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 3.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 4. 단체 또는 개인의 결별한 정치활동 또는 노동운동을 위하여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
제10조(위반에 대한 措置) ①·②(생 력) <u>신 설</u>	제10조(위반에 대한 措置)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3조를 위반한 광고물 중 전화번호·의 연락처가 없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당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이용기간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체 없이 이를 응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독적 의의 용도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